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8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박상혁 · 김주영 · 박균택

이해식 · 허영 · 한민수

정준호 · 한병도 · 채현일

이연희 · 김영환 · 강준현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 실시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마. 교육특구에 학교와 유치원의 설립·운영, 학교 안전공제 적용,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지역교원, 교원자격, 협업교육, 산학겸임교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 교원 추가 배정 및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특구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특구에 특례 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육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5조(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①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감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②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교육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교육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3. 교육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그 밖에 교육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 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6조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특구 사업운영계획(이하 “교육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특구의 변경)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이나 교육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 및 교육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특구의 해제) ① 교육특구의 유효기간은 교육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교육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교육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특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해제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특구위원회(이하 “교육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교육특구의 지정 및 변경 · 해제에 관한 사항
3. 교육특구 협약 및 교육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 · 변경 · 취소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교육특구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특구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 밖에 교육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교육특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교육특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사무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특구 전담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실행, 지역별 사업 운영 상황의 점검·조정, 전국단위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특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특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특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교육특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특구 협약안 작성

2. 교육특구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교육특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교육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 ③ 지역협의체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둔다
 -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특구별 전담조직) ①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특구운영의 성과관리)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방법, 개선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규제특례

제16조(유치원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 · 수업일 수 · 학급편성 · 휴업일, 반의 편성 ·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

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학교(초등 방과 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제2항 및 제29조를 제외하고 같다)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교육감은 교육특구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특구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

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입학 등을 지원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교원(이하 “지역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지역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

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원의 자격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되는 교장의 자격기준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④ 교육특구의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 자질을 평가받은 자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

제28조(교원 추가배치에 관한 특례) 교육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

조제2항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②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가 산학협력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교육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

는 교육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에서 교육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교육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